

의 안 발 의 서

의 번	안 호	2009 -
--------	--------	--------

수 신 : 거창군의회회장

2009. 6. .

제 목 : 조례안 제출

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금연·금주
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붙 임 : 거창군 금연·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.

발의자 : 거창군의회 안 철 우 의원(인)

거창군의회 이 창 도 의원(인)

의안번호	제호
의결연월일	2009. 6. . (제 회)

의결사항

거창군 금연·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안철우 의원 외 1
발의연월일	2009. 6. .

거창군 금연·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009 ~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2009. 6. .

발 의 자 안철우 의원 외 1

1. 제안이유

군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금연·금주 청정공원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군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책읽는 공원」 및 「음민생활공원」을 청정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- 나. 청정공원 안에서 금연·금주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흡연·음주행위의 계도와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의 : 기획감사실 및 보건소 합의
- 라. 기타 : 해당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금연·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군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금연·금주 청정공원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금연”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.
2. “금주”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말한다.
3. “금연·금주 청정공원”(이하 “청정공원”이라 한다)이란 어린이·청소년 및 비 흡연자와 비 음주자에게 흡연과 음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·금주를 권장하는 구역을 말한다.

제3조(청정공원 지정) 군수는 「책읽는 공원」 및 「읍민생활공원」을 청정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]할 경우에 는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.

제4조(청정공원 안에서의 준수사항) 제3조의 청정공원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누구든지 금연·금주토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계도) ① 군수는 청정공원 안에서 흡연 및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.
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군 관내의 관련 있는 사회단체를 지정하여 계도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안내표지의 설치) 군수는 제3조의 청정공원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산의 지원 등)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규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3조 (책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9조 (금연을 위한 조치)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**대통령령이 정하는**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2.13, 2001.4.7, 2002.1.19, 2008.2.29>

②**담배사업법**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**대통령령이 정하는**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**대통령령이 정하는**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**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**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. <신설 2003.7.29, 2008.2.29>

④**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**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**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**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12.13, 2002.1.19, 2008.2.29>

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·방법 등은 **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**. <신설 2002

□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

제6조 (공중이 이용하는 시설) **법 제9조제4항**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소유자등"이라 한다)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(이하 "공중이용시설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1999.10.28, 2003.4.1, 2005.7.28, 2006.4.25, 2008.10.10>

1.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,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2. 「**공연법**」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
3. 「**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**」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
4. 「**유통산업발전법**」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**동법**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
5. 「**관광진흥법**」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
6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의 교사(교사)
7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
8. 「의료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,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·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·보건의료원·보건지소
9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시설
10. 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·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
1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한 목욕장
12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일반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
13. 「식품위생법」 제21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,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
14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
15. 「정부청사관리규정」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16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

제7조 (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)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·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4.25>

1.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
 2.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, 보건소·보건의료원·보건지소
 3.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
- ②제1항에 따른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7.28, 2006.4.25, 2008.10.10>
1.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·실내작업장·회의장·강당 및 로비
 2.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,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
 3.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,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
 4.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
 5.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
 6.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, 휴게실, 강당, 구내식당 및 회의장
 7.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
 8.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, 작업실, 휴게실, 식당 및 사무실
 9.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·여객선터미널·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, 국내선항공기, 선실,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, 전철의 지하역사·승강장 및 차량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
 10.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
 11. 제6조제12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일반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
 12.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
 13.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
 14.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

15.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, 복도,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

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

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[별표 3](#)과 같다.